

농어업부문 경상조사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가데이터청 구미사무소에서는 농어업부문 경상조사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7. 10.

국가데이터청 구미사무소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근무부서 (지역)	채용구분	채용인원	채용구분	채용기간	수당
구미사무소 (구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1명	근로계약	2026. 8. 3. ~ 10. 31.	75,080원/1일

※ 채용기간 등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액급식비, 표본관리비 지급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 담당업무
농어업부문 통계조사업무	- 농어업부문 경상조사 현장조사 (농업면적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등)

3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6. 7. 10.(금) ~ 7. 20.(월)	
서류심사	2026. 7. 21.(화) 10:00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6. 7. 21.(화) 15:00	동북지방데이터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ardb) 채용정보 공지
면접심사	2026. 7. 22.(수) 11:00	구미사무소 2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7. 23.(목) 10:00	동북지방데이터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ardb) 채용정보 공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점수 기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가점
자격증	기타점수	경력, 자기소개서 등	면 접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5	5	90	100	5점~10점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서류전형 세부 평가 기준

(1) 자격증(5점)

자격증	5점	자 격 증		점수
		-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5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유사 자격증 인정)

(2) 기타점수(5점)

항 목	점 수	내 용	비 고
저소득층	2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여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다자녀	2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북한이탈주민	2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장애인	3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 장애인증명서	

(3) 경력,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점수(90점)

○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 기준

<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인원(명)	서류전형 선발인원
1명	5명(5배수)
2명	6명(3배수)
3명	6명(2배수)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자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응시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구미사무소 관내 출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7. 10.(금) ~ 2026. 7. 20.(월) 18:00까지
-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국가데이터처 구미사무소	김동은	구미시 봉곡로10길 11-11 (봉곡동 419)	Tel: 054) 459-6554 email: wjde0917@korea.kr Fax: 054) 465-3023

-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 wjde0917@korea.kr (마감일 18:00 이전 발신분에 한함)
 - 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이중취업 확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스캔하여 첨부 등) 할 수 있음
- 타 기관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평가에 도움이 될 자격증(운전면허증 등)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붙임5)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정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 7. 20.(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사항: 국가데이터처 구미사무소 채용담당자 김동은(054-459-6554)

농어업부문 경상조사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주 1」 분야에는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요원 등] 기재
 2」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원조사 결과 또는 사후 확인 등으로 채용결격사유(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 :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자격증 등)

붙임 :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자격증 등)

【붙임2】(필수제출)

자 기 소 개 서

업무명	농어업부문 경상조사	지원분야	기간제근로자
성명		연락처	- -

※ 본란은 업무경력, 자신의 장점, 지원동기 등을 위주로 1페이지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단,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3】(필수 제출)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대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 확인, 이중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 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학위, 취업지원 대상(저소득, 다자녀,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비자 종류(외국인)	채용요건(자격·경력·학위 등), 채용우대 확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유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장애 종류 및 등급	근로자 채용 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유

미동의

2026년 5월 1일

성명: (서명)

국가데이터처 구미사무소장 귀하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해당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가데이터처 구미사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장애인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해당자만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